

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즉시
------	------	------	----

신청인	① 성 명	② 주민등록번호
	③ 주 소 (전화번호:)	

투자금액명세

④ 투자일	⑤ 금융기관	⑥ 투자대상	⑦ 증권수	⑧ 주당가액	⑨ 투자금액 (⑦×⑧)
. . .					
. . .					
. . .					
계					

신청인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81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를 제출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금융기관장 귀하

신청 시 유의사항

-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81조의4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)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정됩니다.

작성 방법

- ④ 2020년 1월 1일 이전에 투자한 경우 2020년 1월 1일을,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투자한 경우 실제 투자일을 적습니다.
- ⑤ 투자를 위탁하거나 매매한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.
- ⑥ 투자대상은 투자자가 주식 등에 투자한 부동산투자회사,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재간접투자기구의 이름을 적습니다.
- ⑧ 주당 가액은 실제로 매입한 주식의 평균가액을 의미합니다.
- ⑨ 투자금액은 증권 수량에 주당가액을 곱하여 계산하며, 인별 투자금액의 총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